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3]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20-건축과-분양신고-15663호, 2020. 03. 27]로 분양신고 필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360-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5층 지상 31층 1개동 오피스텔 56실(별도 분양예정: 아파트 316세대,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총 5,661.0000㎡ 중 오피스텔 809.0169㎡

- 건축물 연면적 : 총 69,665.2855㎡ 중 오피스텔 지분 11,364.6590㎡

- 본 건축물의 지역별, 지구별, 구역 용도는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에 해당됩니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4호 "업무시설"에 해당 함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34g입니다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1층 ~ 지하 2층	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1층	쓰레기집적소
2층	주민카페
3층 ~ 15층	오피스텔
16층	피난안전구역
17층 ~ 31층	오피스텔

▣ 공급대상

(단위 : m², 실)

타입	공급실수	실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주차장등)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소계		
84OA	28	84.9027	45.6832	130.5859	72.3544	72.3544	202.9403	14.4467
84OB	28	84.9027	45.6832	130.5859	72.3544	72.3544	202.9403	14.446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실,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실수	층구분	실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0.05.27	2021.01.08	2021.08.06	2022.03.08	2022.12.08	2023.04.07	2023.08.08		
84OA	28	3	1	110,842,000	220,143,640	22,014,360	353,000,000	10,000,000	2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4	1	112,412,000	223,261,820	22,326,180	358,000,000	10,000,000	2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5	1	113,668,000	225,756,360	22,575,64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6	1	114,924,000	228,250,910	22,825,090	366,000,000	10,000,000	2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7	1	115,866,000	230,121,820	23,012,18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8	1	117,436,000	233,240,000	23,324,000	374,000,000	10,000,000	2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9	1	118,378,000	235,110,910	23,511,09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10~20	10	120,262,000	238,852,730	23,885,270	383,000,000	10,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21~31	11	121,423,800	241,160,180	24,116,020	386,700,000	10,000,000	2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84OB	28	3	1	105,504,000	209,541,820	20,954,180	336,000,000	10,000,000	2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4	1	106,132,000	210,789,090	21,078,91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5	1	107,702,000	213,907,270	21,390,730	343,000,000	10,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6	1	108,958,000	216,401,820	21,640,180	347,000,000	10,000,000	2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7	1	109,900,000	218,272,730	21,827,270	350,000,000	10,000,000	2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8	1	111,156,000	220,767,270	22,076,730	354,000,000	10,000,000	2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9	1	112,412,000	223,261,820	22,326,180	358,000,000	10,000,000	2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10~20	10	113,982,000	226,380,000	22,638,000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21~31	11	115,049,600	228,500,360	22,850,040	366,400,000	10,000,000	2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36,640,000	109,920,000	

▣ 공통사항

-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각 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면적 및 공유지분면적증감이 1%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대상은 56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세부사항은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II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광고일(2020.03.2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 오피스텔은 견본주택 방문청약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이상 중복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청약 일시	2020. 04. 25.(토) ~ 04. 26(일)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79)
추첨 일시	2020.04.27.(월), 11:00	
당첨자발표	2020.04.27.(월), 13:00	당사 홈페이지(개별조회) http://weveapt.co.kr
계약기간	2020.04.27.(월), 14:00~16: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추첨하고, 당첨 동·호수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청약신청계좌	예금주
일백만원 (₩1,000,000)	청약 신청계좌에 무통장 입금	농협은행	301-0266-1741-1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자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본인 명의)
법인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청약신청금(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통장)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 대리인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03.27.)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호수 발생 시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우선 순위 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 2020.04.27.(월), 11:00
- 추첨 :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건본주택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0.04.27.(월), 13:00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www.weveapt.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예정일시 : 2020.05.04.(월)부터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
-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은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Ⅲ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20.04.27.(월), 14:00 ~ 16:00
- 계약체결 장소 :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79번지)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 계약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시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03.27.)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건의 당첨으로 인해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 수납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66-1741-11	코리아신탁(주)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공급자가 지정하며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 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 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실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 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변 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연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위치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0A/840B	침실2, 침실3	2,510,000	251,000	2,259,000	삼성전자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시 각 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등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 기본제공 품목인 거실+침실1(안방) 제품은 전시용품으로 설치위치, 수량, 디자인 및 사이즈 변경될 수 있음
- 침실2, 침실3의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되는 거실+침실1(안방)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 되어짐.
- 침실2, 침실3의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외기 용량 및 냉매배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 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 됨.
- 상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시공상의 이유로 지상층 골조작업 시작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에어컨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함.

(2) 거실, 주방 마감재 특화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위치	구 분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OA/84OB	거실	접합 대리석 타일 아트월 +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000,000	200,000	1,800,000	

※ 유의사항

- 거실 : 접합대리석타일은 천연석을 가공하여 만든 타일로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택시 기본 포세린 타일이 시공됩니다.
- 주방 : 옵션 선택시 주방 벽체가 상판과 동일한 자재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되며, 벽체 크기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합니다. 미 선택시 기본 도기질 타일이 시공됩니다.

(3) 침실 화장대 특화

주택형	위치	선택	구 분	비고
84OA/84OB	침실 1	선택1	입식형 화장대	- 택 1. - 견본주택은 입식형 화장대로 시공이 되었으며, 좌식형 화장대는 견본주택 이미지를 참고 - 좌식형 화장대에 의자는 제공되지 않음
		선택2	좌식형 화장대	

※ 유의사항

- 가구의 사양 및 규격, 디자인, 업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옵션 [안전방법 방충망 / 단열 필름/ 친환경 도료/ 음식물 처리기 등] 별도 진행 예정

(4)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66-1752-0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IV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버림에 따른 오차는 임의의 호실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 비율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 가격에 의해 정산처리 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주소(전자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착오 또는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계약금(1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세 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분양대금 납부분부터는 위탁사가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 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 사본 및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표등본 1통 첨부) 통보하시기 바람.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및 주변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하셔야 함.
- 지하층은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업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일부 호실은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을 위해 허가도서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침실, 주방가구 레이아웃 변경, 창호 변경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팜플렛 및 견본주택(건립세대), 견본주택 내 모형(비건립 호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견본세대(공사용)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하며 견본세대는 내부 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 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관련법령의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2월 21일 시행)으로 최초공급(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항에 의거, 분양자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임시관리 규약'등을 배포해야 합니다.

V 유의 사항

▣ 단지외부 여건

※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인가 변경 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변경)허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 성능위주소방설계심의,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동측 11M, 서측 50M, 남측 8M, 북측 12.5M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단지진출 입시 혼잡 할 수 있음.
- 오피스텔 서측면은 인접대지와 면해 있어 상호간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건축허가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취·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수용 및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덕인초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8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교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교군(2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교육청 및 시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허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기구 등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도면과 자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기준에 맞는 주택법을 적용하여 주거복합 형태로 설계된 부분으로 단지 외부환경 관련하여 소음 및 분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 인접 건물로 인한 시야가 차단됨을 확인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한 상업시설 및 단지 내 각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동간거리로 인해 각 세대 측벽 창외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모형에 표현된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수종, 식재개수), 바닥포장(재질, 패턴, 색채, 크기), 조경시설물(위치, 크기, 재질, 색채), 어린이놀이터(놀이시설물, 포장, 색상, 재질), 주민운동시설(운동시설물, 포장, 색상, 재질)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야간경관조명, 동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 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경관 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단위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의 최상층은 지붕의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외벽 및 옥상,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설비 및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호간에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과 인접 동에서 볼 때 미관저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2층, 지상16층에는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헬륨, 소방용 고가수조, 소방용펌프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상하부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본 사업부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공지로 입주민 외에도 일반인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임.
- 사업지 내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훼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을 사전에 인지 하고 승인하여야 함.
- 필로티 및 보행통로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집적소는 1개소 계획되어 있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재활용품창고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오피스텔 지상1층에 설치된 쓰레기집적소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소로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단위실은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 분진, 악취,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및 고층부 단위실은 가로등 및 야간 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저층부 단위실은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집적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부 단위실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륨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물건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시설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실외기 장비, 사우나 장비, 헬륨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에서의 이의 제기 및 시설물의 임의 해체, 변경을 할 수 없음.
- 배치도 및 모형 등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 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의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 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내 일부 실 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각 단위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삿짐의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당 건물은 고층 아파트로써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대 방화문 여닫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 완화를 위해 추가 시설(도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상1층 보·차도에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자동차전용구역이 표시되며, 위치는 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음.
- 주차장 진출입구는 동측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진출입 시 혼잡하거나 대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오피스텔 차량은 교통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지하1층(일부구간)에 아파트와 분리 주차되며 추후 주차 위치 변경 및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에 설치됨.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차량 높이 2.7m 이상) 등의 진입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는 지하5층에 되어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 출입구가 위치한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은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커뮤니티 입면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용도별로 구분되어 시공되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비실, 무인택배함, 맘스스테이션, 재활용창고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의 공동 사용 여부는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공동주택 및 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2층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사항으로 화재 발생 등의 비상 시 공동주택 지하1층 코어 및 외부계단(동측2개소) 지상1층~지상3층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통행이 가능함.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인근 세대는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는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기가 있는 것**

으로 간주함.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과 지상2층에 위치하며, 추후 위치 및 실크기 등의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홍보를 위한 CG 및 모형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사가 지정된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도배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본 공사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인조대리석과 강화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 선반가구), 외부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마루, 온도조절기, 조명, 배선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강마루(오피스텔 전 타입)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 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실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이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건축허가도면을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됨..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실외기실 등)
- 단위실의 기준 천장고(거실, 주방, 침실)는 2.3m이며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관 천장고는 타 입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상담사와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실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세탁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 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실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단위실 내 거실 및 복도 등에 도배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 기 바람.

- 단위실 내의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18층 이하 세대의 거실 창호는 소방진입이 가능한 창으로 설치되어 19층 이상 세대의 거실창호와 형태, 열림방식, 유리사양, 배연창의 위치 등이 다르며, 실시공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 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 치수, 부속철물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실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 길이 및 분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 제조사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복도 등의 도배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시공 시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천장 및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 몰딩 및 가구 서라운드, 도어 길이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마감재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디자인, 형태, 크기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각 단위실 내에 설치되는 석재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재료간 맞는 부위는 코킹처리 하여 마감될 수 있음.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단위실 내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 함.
- 가구 설치를 위한 세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단위실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 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실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욕실 내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위생도기류 하부에는 제외됨.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 설치되지 않음.
- 단위실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단위실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침실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전함은 실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외기실 상부에는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단위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 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열려있는 방식으로 시공됨.
- 전 단위실에 화재 시 외부로 피난을 위한 탈출형 대피시설이 외부 발코니에서 설치됨.
- 탈출형 대피시설에 거실 및 침실 발코니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화재 시 아래층 단위실로 이동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아래층과 교차 설치됨.
- 탈출형 대피시설 내부의 마감 및 난간대의 형태, 재질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창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재발생 시 배연을 위하여 자동 개방되는 창(배연창)으로 적용됨.
 - 층수에 따라 배연창 위치(지상18층 이하는 안방 및 다용도실, 지상19층 이상은 거실) 및 해당 창호의 형태(개폐방식, 열림창호 크기, 유리사양, 소방진입창호 적용유무 등)가 다르므로, 계약 전 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배연설비가 적용된 창호의 경우,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창호가 열리는 구조로 작동스위치로만 개폐가 가능하며,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음.
 - 배연창이 이중창인 경우 개폐 시 내·외부창호가 동시에 구동되며, 개폐 속도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음.
 - 배연창호의 위치 및 크기, 열림(개폐)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변경) 허가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으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질, 생산 납기 등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시공여건 등 부 득이한 경우에 동질 또는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전시 실의 경우, 전시실과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 지 않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위실은 유상옵션 적용 상태로 전시되었으며, 옵션 미선택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실 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부착안내문구 처리된 세대 환기 장치, 온도조절기, 조명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관람객을 위한 장치로서, 본 공사시에는 냉방전용으로 시공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 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실,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복도, 거실, 침실, 주방등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는 본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유도등,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 및 설치위치와는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 단위실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당사가 제안하는 수납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며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 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VI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은 위탁자 "(주)케이비에스테이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시공사 "두산건설(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신탁약정"이라 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탁자는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분양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주)케이비에스테이트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코리아신탁(주)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자 (주)케이비에스테이트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두산건설(주)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하여 일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 코리아신탁(주)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으며, 수분양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오시공, 미시공 및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주)케이비에스테이트, 두산건설(주)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주)케이비에스테이트와 수탁자 코리아신타(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타에 따라 코리아신타(주)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타해지 또는 신타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코리아신타(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 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주)케이비에스테이트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매수인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 코리아신타(주)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모든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VII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성능의 표시 「주택법」 제39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에 의거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 대상 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 각 실별 난방 온도 조절 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배정기술단
감리금액	1,699,097,805	439,761,254	55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0-104-0000600호	₩14,510,3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p>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p>※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p>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p>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p>

<p>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p>	<p>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사업시행권 양도</p>	<p>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p>
	<p>【분양광고】 건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p>
	<p>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p>
	<p>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4. 건분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p>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p>
	<p>당해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p>

등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사	상 호	코리아신탭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위탁사	상 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테이트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89-5, 나동 201호 (신서동, 더블럭)
	법인등록번호	170111-0701210
시공사	상 호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194277
분양대행사	상 호	주식회사 골드문씨앤디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7층 710호 (만촌동, 에스큐브)
	법인등록번호	170111-0604414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79번지

▣ 분양홈페이지 : www.weveapt.co.kr

▣ 분양문의 : ☎ 053-639-2121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